

대전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가단110646 판결 [구상금,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현, 김덕현
변 론 종 결 2021. 5. 6.
판 결 선 고 2021. 5. 20.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3,683,517원 및 그 중 33,187,351원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0. 4. 17.까지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9. 8.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26. 접수 제546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5. 피고 A과 사이에 ‘약정내용 개별거래, 보증금액 42,750,000원, 보증기한 2020. 3. 4.(최초 2019. 3. 4.까지였으나 그 후 2020. 3. 4.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위 신용보증약정서에 근거하여 채권자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과 ②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③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은행 대전중앙지점(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 아래표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A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C은행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발급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금
2018.3.5.	D	42,750,000	2019.3.4.	45,000,000

라. 피고 A은 2019. 8. 9. 기한이익상실로 신용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고 한다), 이에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9. 9. 10. C은행에 금 33,598,241원(= 원금 33,250,000원 + 2019. 6. 26. ~ 2019. 9. 9.까지의 이자 348,2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고 한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으로부터 410,890원만을 지급받아 현재 나머지 33,187,351원(= 33,598,241원 - 410,890원)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당사자간에 체결된 원고 소정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위 대위변제일인 2019. 9. 10.부터 현재까지 연 8%이고, 원고가 대위변제한 후 피고 A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410,890원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금 90원이다. 또한, 원고가 위 약정에 따른 구상금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후 상환받지 못한 법적절차비용은 금 496,076원이다.

바.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8. 2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19. 8. 26. 접수 제54675호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B에게 경료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대위변제금 등 청구 관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등에 따라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금 등 합계 33,683,517원(= 미수대위변제금 33,187,351원 + 확정손해금 90원 + 대지급금 496,076원) 및 그 중 위 미수대위변제금 33,187,351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9. 9. 10.부터(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위변제금의 이자정산은 그 전날인 2019. 9. 9.이다.)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4. 17.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사해행위 취소청구 관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A은 2019. 8. 6. 폐업신고로 최초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2019. 8. 9. 기한이익상실로 최종사고 처리가 된 점, ②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피보증인이 폐업한 경우 피보증인에게 원고에 대한 사전상환의무가 발생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대위변제 채권은 2019. 8. 6.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던 점, ③ 피고들은 위 최초의 신용보증사고 이후 20일이 지난 2019. 8. 26.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에 이른 점, ④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위변제를 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근접한 시일 내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대위변제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위변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이후 20여일도 안 되어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에 이른 점, ② 피고 A이 그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피고 A의 유일한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2015년경 피고 A이 E과 함께 E의 모 F이 취득한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에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으로 도급을 주었는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F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평택시 H 토지 지상에 사용승인일이 2015. 8. 20.로 된 상가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점, ② 피고 A과 E을 채무자로 하여 피고 B(G) 앞으로 총 채무액 6,000만 원으로 된 공사대금지불각서가 2015. 12. 22.자로 작성되어 있는 점, ③ 이에 위 각서를 기준으로 피고 B의 피고 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은 2015년경 발생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 채권보다 그 성립시기가 앞서는 점 등은 인정된다(그 외에 우선적 담보제공의 필요성으로 살펴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담보제공이 채무변제력을 높이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 등 우선적 담보제공의 필요성에 기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특정채권자를 다른 채권자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사해행위는 일반적으로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B의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대위변제 채권보다 성립시기가 앞선다는 사정만으로 우선적 담보제공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의사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A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인 피고 A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모두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 자체, 피고 A이 C은행에 채무가 있고, 이를 원고가 보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여 사해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2015년경 발생하였음에도 피고 B은 그로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한 채무 독촉이나 이행 청구의 의사표시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직후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에 이르게 된 점, ②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피고 A과 E의 공동채무로 보이고, 한편 피고들 주장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담보제공이 있기 전 이미 총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담보제공까지 포함하면 공동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피고 A이 거의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셈이 되어 그러한 담보제공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피고 B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

결국 앞서 인정된 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이 사건 대위변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악의도 모두 추정되며, 일반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이상,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26. 접수 제546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근

목 록

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55.5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평택시 대 2494㎡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494분의 41.21

2. 근저당권의 표시

접수일자 : 2019년 8월 26일

접수번호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동기와 접수 제54675호

채권최고액 : 금 60,000,000원

근저당권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호

